

1. 개정이유

- 공관(주쿠바대사관) 신설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로 인한 레바논 내 치안 및 생활 환경 악화를 반영, 주레바논대사관에 대한 특수지 조정

2. 주요내용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 환경지수 및 ECA 험지지수 합산 결과를 근거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 등급 설정·조정

구분	현 등급	신규 지역 등급
주쿠바대사관	-	나
주레바논대사관	다	나

- 특수지 평가방법 구체 명시
 -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등급 조정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미주의 나 지역란 중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 쿠바”로 하고, 같은 표 중동의 나 지역란 중 “알제리”를 “알제리, 레바논”으로 하며, 같은 표 중동의 다 지역란 중 “이란, 레바논”을 “이란”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의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레바논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하며, 쿠바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의2]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3조의2 관련)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의 합산점수	570점 이상	460점 이상	390점 이상

※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결과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개정 2022. 9. 2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아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파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파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이르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이르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젓다), 이집트	중동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레바논	이란, 레바논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젓다),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현행	개정안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2. 9. 21.>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3조의2 관련) <table><tr><th>구분</th><th>가 지역</th><th>나 지역</th><th>다 지역</th></tr><tr><td>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협지지수의 합산점수</td><td>570점 이상</td><td>460점 이상</td><td>390점 이상</td></tr></table>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협지지수의 합산점수	570점 이상	460점 이상	390점 이상	<table><tr><th>구분</th><th>가 지역</th><th>나 지역</th><th>다 지역</th></tr><tr><td>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협지지수의 합산점수</td><td>570점 이상</td><td>460점 이상</td><td>390점 이상</td></tr></table> ※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협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결과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다.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협지지수의 합산점수	570점 이상	460점 이상	390점 이상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협지지수의 합산점수	570점 이상	460점 이상	390점 이상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협지지수의 합산점수	570점 이상	460점 이상	390점 이상														